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 경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7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 경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순선, 전병주, 최 선,
채유미, 김수규, 장인홍,
조상호, 임종국, 이석주,
김제리, 김경영 의원 (11명)

1. 제안 이유

- 학생의 소질계발 등을 위하여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 미래 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자유학기제의 지원계획,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5조).
- 라.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·연수 실시,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7조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중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자유학기제”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·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,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유학기제 지원계획)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
2.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연수
3.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자료개발 및 보급)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

등의 자료를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·연수 실시)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, 대학,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